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8.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형사사법절차는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절차와 달리 여전히 종이기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종이기록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되고 효율성도 떨어지며 방어권 보장에도 취약한 측면이 있음
- 나.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의 이용·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마련함
- 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로 인하여, 기록을 열람·복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보다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현장조사나 원격지 화상조사 등 국민에게 편리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기록 검색이 용이해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등 수사와 재판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업무 전반에 걸쳐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3.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안 제2호)

-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도면·사진·음성·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함
-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를 말함
- 3)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함
- 4)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 5)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비롯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함
- 6)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함
- 7)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을 말함

- 8) “사법전자서명”이란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나. 전자문서등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안 제5조)

- 1)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 2)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등은 형사사법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간주

다. 전자서명(안 제7조)

-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 2) 법관,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등을 작성 후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함
- 3)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법원 이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등을 작성 후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함
- 4) 이 법에서 규정한 전자서명, 사법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은 형사사법
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주

라. 전자문서등의 작성(안 제10조, 제11조)

-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함(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예외 규정)

-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행정전자서명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예외 규정)

마. 전자문서등의 유통(안 제13조)

-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등을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송부

바.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안 제14조)

-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전자적 송달·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에 대하여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통지할 수 있음
- 2) 전자문서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통지함
- 3) 송달·통지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등을 확인한 때 송달·통지된 것으로 간주
- 4) 송달·통지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 송달·통지 간주(대통령령
등으로 예외 규정)

사. 전자문서등의 열람·복사(안 제16조)

- 1)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열람·등사·복사는 인터넷, 그 밖의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열람·복사 또는 전송하는 것을
포함
- 2) 등록사용자가 아닌 자가 전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등의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음

아. 영장의 집행에 관한 특례(안 제17조)

- 1) 「형사소송법」의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전자문서등의 형태로
제시·전송할 수 있음
- 2) 전자문서등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음

자. 재판의 집행지휘에 관한 특례(안 제19조)

- 1) 「형사소송법」 제461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
- 2)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력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

차. 벌칙(안 제22조)

증거기록을 전자문서등의 형태로 열람·복사한 피고인·변호인이 당해
사건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생 략

다. 합 의 :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합의되었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약칭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의 이용·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도면·사진·음성·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를 말한다.
3.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이하 “형사사법절차”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비롯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6.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7.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8. “사법전자서명”이란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1. 「형사소송법」
2. 「소년법」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3장 보호사건 부분에 한정한다)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부분에 한정한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장 아동보호사건

부분에 한정한다)

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7. 「보안관찰법」

8. 「통신비밀보호법」

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등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문서등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①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형사사법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제6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전자서명)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전자문서등에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등으로 작

성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법원 이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서명, 사법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은 형사사법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전자문서등의 간인(間印)은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전자문서등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제8조(전자문서등의 제출방법)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전자문서등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문서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③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등을 접수·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되, 제출된 전자문서등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출인이 접수한 전자문서등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출인을 상대로 동일성을 확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 의견서,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44조의2, 제244조의3, 제244조의4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이 전자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행정전자서명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등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되,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되어 등재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화대상문서 보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11조제1항의 전자화대상문서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를 마친 후에는 전자화대상문서를 그 제출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인을 상대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기회를 부여한 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등의 유통)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등을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

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으로 작성된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되, 전자문서등과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경우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

3. 전자적 송달·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은 전자문서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송달·통지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등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송달·통지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전자문서등을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3.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3조제3항, 제4항은 전자문서등을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에 준용한다.

제16조(전자문서등의 열람·복사) 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열람·등사·복사는 전자문서등을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열람·복사 또는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용자가 아닌 자가 전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의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등을 열람·복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열람·복사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목록과 서류의 전자문서등을 당해 사건의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영장의 집행에 관한 특례) ① 「형사소송법」 제73조, 제113조, 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에 따른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등의 형태로 제시·전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으로 집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의 출력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등을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되, 전자문서등과 동일성이 확보되고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다르게 수 통이 출력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① 형사재판에 있어서 전자문서등의 정

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사진 등에 관한 정보 :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2. 음성이나 영상정보 :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등의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판의 집행지휘에 관한 특례)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으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제2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등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자적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제22조(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등의 정보를 당해 사건의 소송 준비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년 내에 시행하되,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별 또는 기관별로 대통령령등으로 적용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 이미 개시된 수사사건(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등 사건이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던 사건을 포함한다) 및 재판사건(상소권회복사건 또는 재심사건 등 기존에 종이기록이 작성되었던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검사 김상준	
연 락 처	(02) 2110 - 3932